



뉴욕 재개

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건설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건설 사업체를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전역의 건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건설 사업체는 건설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물리적 거리두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업무 활동의 안전 또는 핵심 기능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하지 않는 한 직원 간 6피트 거리를 확보하십시오. ✓ 직원 간의 거리가 6피트 미만인 경우, 직원은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. ✓ 모든 실내 작업에 대하여, 현장 250 스퀘어 피트 당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 1명으로 인력을 제한합니다. 단 추가적 개인 보호 조치(항상 페이스 커버 착용 등)를 시행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. ✓ 좁은 공간을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 미만으로 점유해야 합니다. ✓ 중요하지 않은 대면 모임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한합니다. ✓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직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어 현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만 대기하도록 하고, 소매 영업 시간을 제한하여 긴 시간동안 직원 및 고객의 이동을 분산하며, 도착/출발 시간을 교대로 설정하고 A/B 팀을 분리합니다. ✓ 테이프 또는 표지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현장 영역(출퇴근 기록 스테이션, 건강 선별 스테이션 등)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커를 표시합니다. ✓ 워크스테이션의 배치를 수정하여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 명의 직원 및/또는 팀이 한 영역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. 가능하지 않은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공기 흐름, 냉온방 또는 환기가 원활한 구역에서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물리적 가림막(플라스틱 차폐 벽 등)을 설치해야 합니다. ✓ 모든 사람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지 않는 한, 좁은 공간(엘리베이터, 호이스트 등)에 한 번에 한 명만 있어야 합니다. ✓ 좁은 통로, 복도 또는 공간에서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를 활용하여 양방향 이동량을 완화합니다. ✓ 가능한 경우 직원의 자택 근무를 허용합니다. ✓ 비필수 방문객의 현장 출입을 금지합니다. ✓ 가능하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진행합니다. 필수 대면 모임(회의 등)은 참가자들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되는 공간에서 개최해야 합니다.
보호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할 가리개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. ✓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작업 특성 상 더욱 엄격한 개인 보호 장비(personal protection equipment, PPE)(N95 인공 호흡기, 페이스 쉴드 등)가 요구되지 않는 한, 천 소재(수제 봉제, 킥 컷, 두건) 및 의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	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뉴욕 재개



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건설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건설 사업체를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전역의 건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건설 사업체는 건설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보호 장비 (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또는 손상되거나 더러워졌을 때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하며, 공유할 수 없으며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. ✓ 물체(도구, 기계, 자재, 차량 등)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거나,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구역과 접촉할 때는 장갑(업무 관련 또는 의료)을 착용하거나,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으십시오. 	
위생, 청소 및 소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질병 통제 예방 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 및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, DOH)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, 시간 및 청소/소독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. ✓ 비누,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포함하여 근무 인력을 위한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. ✓ 직원들이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/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,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. ✓ 공유 물품(도구 등) 및 표면을 포함하여 화장실 및 공용 구역 등 사람의 이동이 잦은 구역은 환경보호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환경보존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, DEC) 제품을 사용하여 최소 매일 또는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. ✓ 청소 또는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소재나 기기를 손상하는 경우, 직원은 사용 중 손 위생 스테이션을 사용 및/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받아야 합니다. ✓ 음식 및 음료의 공유를 금지합니다(뷔페 스타일 식사)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가능하면 안전 예방 조치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로 환기합니다(창문 및 문 열기). ✓ 직원이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고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.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



뉴욕 재개

고용주 및 피고용인을 위한 건설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주 지역의 모든 건설 사업체를 비롯해 이전 필수 운영을 허용받은 주 지역의 건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.

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, 모든 건설 사업체는 건설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구 사항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작업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, 주, 연방의 법, 규정,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

	필수	권장 모범 사례
의사소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. 적절한 위생,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,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,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에게 상기시키도록 현장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.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안전 지침을 자주 전달합니다.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가 양성인 경우 직원은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하고 접촉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그 개인과 밀접한 접촉을 한 근로자 또는 방문자와 같은 잠재적 접촉 통보가 포함되며 주 및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.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으로 직원,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.
선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픈 직원은 직장에서 병에 걸렸다면 자택으로 돌아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. 양성 사례를 대비해 청소, 소독 및 접촉 추적 계획을 세우십시오. 업무 개시 전 직원 및 필수적인 방문자에게 필수 건강 선별 검사(설문지, 체온 검사 등)를 진행하며, (1)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, (2)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/또는 (3)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밀접한 접촉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. 평가 응답은 매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해야 합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에 통보하기 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격 선별(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)을 실시합니다.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연속적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 현장 선별자는 고용주가 임명한 CDC, DOH 및 OSHA 프로토콜 숙지자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.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,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.

STAY HOME.

STOP THE SPREAD.

SAVE LIVES.